

2024년 소득기준표 및 영양위험요인 세부사항

1. 대상자격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(기준 중위소득의 80%)

|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
| 2인 | 2,947,000 | 104,866 | 38,455 | 105,889 |
| 3인 | 3,772,000 | 134,671 | 80,190 | 135,906 |
| 4인 | 4,584,000 | 163,987 | 118,770 | 165,995 |
| 5인 | 5,357,000 | 191,507 | 140,849 | 194,124 |
| 6인 | 6,095,000 | 217,374 | 170,355 | 220,815 |
| 7인 | 6,812,000 | 243,098 | 200,356 | 247,170 |
| 8인 | 7,530,000 | 271,291 | 233,543 | 277,236 |
| 9인 | 8,247,000 | 296,718 | 262,392 | 304,986 |
| 10인 | 8,964,000 | 324,452 | 291,356 | 336,105 |

1)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로 한정

2)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(소득수준)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%만 합산

2. 영양위험요인 판정기준

○ 빈혈검사

-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의해 빈혈로 판정된 경우 (빈혈 판정기준 : WHO 기준)
 - 6~59개월 영유아: 11g/dl 미만 - 5세 유아: 11.5g/dl 미만
 - 임신부: 11g/dl 미만 - 출산수유부: 12g/dl 미만
- ※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, 혈액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모체의 위험요인을 적용할 수 있음

○ 신체계측

■ 영유아

저체중이나 성장부진, 과체중 또는 비만

※ 질병관리본부·대한소아과학회·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제정위원회에서 발표한 '2017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'에 근거하여,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

- 연령별 신장, 체중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
-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
-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
- 표준체중에 대한 비율이 80% 미만
-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85th percentile 이상(24개월 이상의 유아에 한함)

- 출산·수유부: 저체중(BMI 18.5미만), 과체중 또는 비만(임신기간 중 체중증가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/산모수첩 제출요)

○ 영양섭취상태조사

■ 24시간 회상법

※ 영양소 섭취상태에 의한 영양위험판정은 보건복지부,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(DRIs, 2020)에 근거하여 판정

○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

-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항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

- 저체중아, 조산, 사산, 유산, 기형아 출산, 다태아(쌍생아 이상) 임신 혹은 출산한 경우, 임신중 고혈압·당뇨 진단을 받은 경우 등